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2. 8.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 11. 13.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0. 11. 13.

다. 상정일자: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2020.12.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예산과장 허영희】

가. 제안이유

2020. 7. 2. 부터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마포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및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2) 마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안 제3조)
- 3)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안 제4조, 제5조)
- 4) 마포사랑상품권의 잔액의 환급(안 제6조)
- 5) 마포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정책(안 제7조)
- 6) 판매대행점·운영대행사의 협약 등(안 제8조)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본 조례 제정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위축된 소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로페이¹⁾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랑 상품권인 “마포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품권 발행에 따른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자 2020년 11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안은 제1조에서 제8조까지 구성되어 있는 바,

-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의하고 있으며
- 안 제2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3조는 마포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마포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을 명시하였고, 상품권의 종류로 선불 전자지급수단으로 선정한 사항, 권면금액, 상품권의 유통기간 등을 차례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와 제5조는 가맹점의 등록과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 안 제6조는 상품권 잔액의 환급 비율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7조에서는 상품권 할인판매, 추가 충전금 지급 등 마포사랑 상품권의 활성화 정책을 담고 있고
- 안 제8조는 판매대행점·운영 대행사와의 협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자 제정 근거법인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1)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서울시와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하여 도입한 공동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말한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사료되어 법률에도 부합하고,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짐.

- 본 상품권 발행의 효과성을 살펴보면, 상품권 사용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자금이 거대 기업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자원의 순환 활용을 통해 재래시장 및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조례안 중 안 제3조에 마포사랑상품권의 종류를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단일화하고 있는데 모바일 기반으로 한 본 상품권이 IT 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은 노년층 등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되어 고령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고,
- 현재 지원되고 있는 시비(市費)가 중단될 경우에는 할인율이 낮아져 상품권 판매량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으니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